

의안번호	제256호
의결 연월일	2011년 월 일 (제 305 회)

##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

제출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1년 11월 2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#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

의안 번호	25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11월 25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

## 2. 주요내용

- 조합의 명칭(안 제2조)
- 구성 및 사무소의 위치(안 제3조, 제4조)
  - 충청북도, 진천군, 음성군을 구성원으로 충북혁신도시 내에 둠
- 조합의 사무(안 제5조)
  - 충북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, 건설관련 협의·조정 에 관한사무
  - 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 정주여건 조성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무
  -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
- 의결기구 - 조합회의(안 제6조 ~제11조)
  - 조합원이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조합의 주요사항 심의·의결
  - 의장은 충청북도 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 선출하며,  
부의장은 진천군수·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함
  - 정기회 1회 개최(매년 4/4분기 중), 재적위원 1/3 요구시 임시회 소집
- 집행기관 - 사무기구(안 제12조, 제13조)
  -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둠
  - 조합장은 충청북도지사 임명, 사무직원은 자치단체 파견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
- 경비부담(제 14조)
  -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자치단체의 분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
  -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조합원간 협의로 결정

3. 규약제정안 : 붙임

4. 관련법규 : 붙임

5.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결과 : 해당 없음

6. 입법예고 : 해당 없음

7. 기타사항
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없음

# 충북혁신도시조합 규약안

## 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약은 충북혁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조합의 명칭) 이 조합은 “충북혁신도시관리청”(이하 “조합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3조(조합의 구성) 이 조합은 충청북도, 진천군, 음성군(이하 “조합원”이라 한다)을 구성원으로 한다.

제4조 (사무소의 위치) 이 조합의 사무소는 충북혁신도시내에 둔다.

제5조(조합의 사무)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
1. 충북혁신도시 건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사무
2. 충북혁신도시 건설관련 협의·조정예 관한사무
3. 청사 및 공공시설물 등 정주여건 조성·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무
4. 충북혁신도시내 대민 행정서비스를 위해 조합원이 합의하여 조합에 위임한 사무
5. 기타 조합의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

② 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,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## 제2장 조합회의

- 제6조(구성 및 자격)** ① 조합에는 조합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.
- ② 조합회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충청북도 3인, 진천군 3인, 음성군 3인으로 한다.
- ③ 조합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
1. 조합원 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중 각 1인.
  2. 조합원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회 의원 중 각 1인.
  3. 조합원 자치단체가 추천하는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각 1인.
-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.
- ⑤ 제3항 제1호,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⑥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위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⑦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⑧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이 속해 있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회에서 즉시 새로운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⑨ 제8항에 의거 추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- 제7조(의장 및 부의장)** ① 조합회의의 의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, 부의장은 진천군수·음성군수가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하며,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의장은 조합회의를 대표하고, 조합회의를 관장한다.
-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, 의장의 궐위 또는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 보궐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**제8조(의결사항)** 조합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조합규약의 개정안
2. 조합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·개정 및 폐지
3. 예산의 심의·확정과 결산의 승인
4.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의 선임
5.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을 요하는 중요사항
6.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조합원별 사업비 분담기준의 결정
7. 조합의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
8. 조합의 중요재산 취득·처분
9. 기타 조합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**제9조(조합회의의 운영)** ① 조합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, 정기회는 매년 4/4분기 중에 1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·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, 공무원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③ 조합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)** ① 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조합회의가 심의·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 또는 2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11조(행정사무감사)** ① 조합회의는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4/4분기 중 1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.

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.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 조합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합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### 제3장 집행기관

**제12조(조합장)** ① 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조합장은 진천군수, 음성군수 협의를 거쳐 충청북도지사가 임명한다.

③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, 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.

**제13조(사무기구)** ① 조합에는 조합 및 조합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조합에서 임용한 계약직 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조합의 사무기구와 정원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4장 재 무

**제14조(경비부담)** ① 조합의 경비는 정부의 지원금,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금,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②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공동사업비는 아래와 같이 분담하고, 기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조합회의에서 정한다.

1. 조합운영 필요경비 중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에 반영하고, 사무실운영 등 경상경비는 조합원이 균분한다.
2. 공동사업의 사업경비는 분담을 원칙으로 하되 분담비율은 조합원 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5조(예산·회계 등)** ① 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제출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·확정한다.

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의 예산편성 및 집행, 재무회계,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다.

④ 기타 예산편성 및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6조(결산)** ① 조합장은 출납폐쇄 후 3월이내(5월31일)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조합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조합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승인을 얻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은 2인 이내로 하되,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7조(동산 및 부동산의 처분 등)** 조합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하여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라 처분하며, 필요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의한다.

**제18조(위탁운영)**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19조(조합의 존속기간)** 조합의 존속기간은 설립일로부터 해산일까지로 한다.

**제20조(조합의 해산)** 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복귀하고, 그 재산의 처분은 조합원 분담비율에 의한다.

**제21조(기타)** 이 규약이 정하는 사항 이외의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규약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련법령 발췌

## 지방자치법

[일부개정 2010. 6. 8 법률 제10344호], 시행일 2010. 6. 8

제159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)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는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2.29>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.

제160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.

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 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.

제161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·의결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를 총괄한다.

제162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)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
2.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
3. 사무소의 위치
4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
5.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
6.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
7.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
8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63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·감독) ① 시·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, 시·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·도지사의,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·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·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·감독을 받는다.<개정 2008.2.29>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<개정 2008.2.29>

제164조(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)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 제1항을 준용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.